

2012. 4. 11. 실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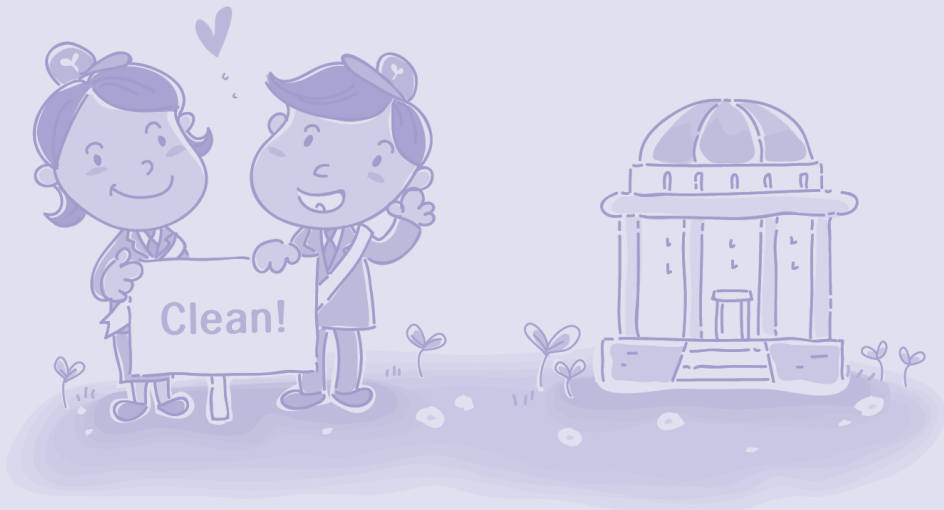
2012. 4. 11. 실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이 책자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포함)에 있어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적법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것입니다.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는 기 배부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를 활용하여 회계처리하시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의 구분, 선거비용 보전대상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본 책자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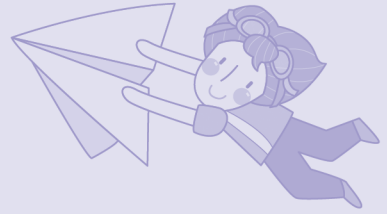
본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책자 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www.nec.go.kr) - 정보광장 - 정치자금정보 - 정치자금자료』란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I.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회계사무 일정	07
II.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보전제한 · 반환	
1. 선거비용 보전청구	08
2.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09
III. 선거비용 및 보전대상 여부 문답풀이	
1.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10
2.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	17
3. 시설물 · 인쇄물 등	18
4. 공개장소 연설 · 대담	22





5. 전화이용 선거운동	23
6. 신문·방송·인터넷 등 이용 선거운동	25
7. 그 밖의 사항	26
8. 선거비용 보전제한·유예	27
IV.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항목 일람표	30
V.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 통상거래가격 등 산정기준	55
2. 세부 항목별 결정내역	56



I.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회계사무 일정

- ◆ 지역구예비후보자 등록 : 2011. 12. 13. (화)부터 (선거일전 120일부터)
- ◆ 후보자 등록 기간 : 2012. 3. 22. (목) ~ 3. 23. (금)
- ◆ 선거운동 기간 : 2012. 3. 29. (목) ~ 4. 10. (화) (13일간)
- ◆ 선거일 : 2012. 4. 11. (수)

●●● 주요 회계사무 일정

주요 회계사무	일 정	담당주체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 공고	2011. 12. 3.(토)까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 · 신고 및 예금계좌 신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표자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시	선거연락소장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정당선거사무소장
정치자금 수입 · 지출내역의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구비	수입 · 지출건 발생시마다	회계책임자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2012. 4. 23.(월)까지	후보자, 정당
정치자금 수입 · 지출 회계마감	2012. 5. 1.(화)까지	회계책임자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선거비용 추가 보전청구)	[지역구 국회의원] 2012. 5. 11.(금)까지	회계책임자
	[비례대표국회의원] 2012. 5. 21.(월)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2012. 5. 11.(금)까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수입 · 지출내역 확인 · 조사	별도 일정통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및 부담비용 보전 · 지급	2012. 6. 8.(금)까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Ⅱ.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보전제한·반환

●●● 1. 선거비용 보전청구

- ◆ 청구기한 : 2012. 4. 23.(월)까지
- ◆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추가 보전 청구 가능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2012. 5. 11.(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2012. 5. 21.(월)

- ◆ 청구권자 : 후보자, 정당
- ◆ 보전요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 ◆ 청구내역 확인 및 지급
 - 청구내역 확인 : 보전비용 지급전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청구내역 진실성 여부 확인
 - 보전비용 지급 : 2012. 6. 8.(금)까지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

●●● 2.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 보전제한 주요 사유

-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후보자의 득표수 등 보전 요건을 미달하는 때
-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때

◆ 선거비용 반환 대상

- 보전비용 지급후 착오 지급된 보전비용이 발견된 때
-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등의 죄로 당선무효 되거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

※ 자세한 사항은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제8장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참조



Ⅲ. 선거비용 및 보전대상 여부 문답풀이

●●● 1.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Q0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 ①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 정당을 포함)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나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에 LED(동영상 표출은 제외)를 이용한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시 그 제작비용
- 고층건물에 현수막 등 설치·철거에 따른 특수장비(고가사다리차 등) 임차비용
-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보완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보완된 현수막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등

◎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실비(숙박비 제외)
- 후보자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고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취사비 등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 후보자 사진의 작성비용과 선거벽보의 보완 첨부 비용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기획 · 도안료, 인쇄료
- 선거벽보 · 선거공보를 관할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의 제작과 관련한 교정비용(기획 · 도안료에 포함)
- 선거벽보 ·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발송용봉투 작성비와 우편발송 비용
- 오 · 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첨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부임 등

◎ 거리게시용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제작 · 설치 · 철거비
-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현수막의 제작 · 설치 · 철거비
-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부득이 개인소유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급한 사용료(통상거래가격) 등

◎ 어깨띠, 표찰 · 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의 구입 · 제작 등 비용

- 『공직선거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 윗옷 · 모자 등 소품 착용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사용한 어깨띠, 윗옷 · 모자 등 소품(이하에서 '어깨띠 등 소품'이라고 함) 제작비
- 선거운동용 윗옷을 교체 사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어깨띠 등 소품의 제작비

- 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실제 착용가능한 수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 LED 네온보드를 『공직선거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임차비용 등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기획·도안·제작·광고비
- 방송연설의 제작비·방송료
- 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 또는 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에 지불한 분장비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 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도안료 및 설치·철거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연단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
-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유류비, 유료통행료,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그 도선료
- 확성장치·녹화기 임차비 또는 수리비
- 로고송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설치된 녹화기를 통하여 방영하는 홍보물에 수화통역을 함께 방영하는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직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등

◎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

- 임시전화 임차료, 설치·기본료, 통화료(문자메시지 전송요금 포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문자메시지 전송요금 포함)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하되 보전하지 아니함)이내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컴퓨터, CTI 전용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료
-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 등

◎ 선거운동용 명함(점자형 포함) 제작 비용

◎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비용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 스마트폰 3차원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한 선거용 홍보물 등의 제작비용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 전송용 동영상 제작비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그 밖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첩부·철거비
-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거벽보 등 코팅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등

■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②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추천정당 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전까지 해당 후보자(추천정당 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④ ② 및 ③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추천정당 포함), ② 또는 ③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추천정당 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Q02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선거권자 추천장 인쇄비용 등)
-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하기 위한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
- 정책·공약 개발 등 선거운동기획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운동 준비 등을 위한 적법한 여론조사 비용
- 방송연설 시연에 소요된 비용 등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그 밖의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비용
- 선거비용의 계좌입금·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수표발행 수수료
-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범칙금 등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그 밖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그 밖의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신규로 설치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그 밖의 유지비는 선거비용임.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책상 및 의자 등 OA 임차·구입·설치비
- 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 내부 수리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선거운동용 전화 키폰 공사비
- 선거사무소 등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
- TV, 복사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생수·휴지·쓰레기 봉투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첩부·철거비
-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 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
-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 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등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 비용

- 『공직선거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 등을 첩부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의 운영비용
 -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유류비·기사인건비·수리비 등

-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부담비용)
 - 점자형 선거공보 등 인쇄비 등
 - 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활동보조인은 1명만 둘 수 있으며 선임 신고하여야 함)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 정리비용
 -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담당하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일후에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비용 등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

●●● 2.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

Q 01 선거사무관계자가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그 식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수 (가족은 제외) : 10인]에게는 1인당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경비는 적법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로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청구 시 후보자와 함께 단닌자의 식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위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제공받은 끼니만큼의 식비(끼당 6,660원)를 공제하고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02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는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는 선거비용에 해당하나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식사대용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Q 03 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 04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취사인부임 및 부식구입비는 선거비용인가요?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선거사무장 등에게 제공하는 실비(식비)의 범위내에서 취사인부 고용 및 쌀 · 반찬 등 부식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비(식비)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보전합니다.

※ 취사비용액(취사인부임, 취사도구 · 주방기구임차비, 주식 및 부식 구입비, 가스 등 연료비)은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선거운동 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Q05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시 보전대상인가요?

- ❖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사무장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당 또는 실비 기타 이익제공시 위법비용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선거사무관계자를 회계사무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Q06 선거사무소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는 보전대상인가요?

-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 ● 3. 시설물 · 인쇄물 등

Q01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게시 현수막, 거리게시 현수막을 교체하여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인가요?

- ❖ 오·훼손 또는 디자인이나 문구 교체등의 사유로 교체 제작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대상입니다.

Q02 선거사무소 내부 게시물은 선거비용 보전대상인가요?

- ❖ 선거사무소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선거사무소 내부에만 게시하는 각종 홍보물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03 거리게시 현수막의 이동게시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인건비 등의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이동게시한 경우 현수막 제작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이동 게시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Q 04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입니다.

Q 05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제작·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사용한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간판 등의 제작비용을 총 게시일수로 나눈 후 선거운동기간중 게시일수를 곱한 금액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일할계산). 다만, 해당 간판 등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새로 교체한 간판·현판·현수막 비용만 보전합니다.

Q 06 선거일후 현수막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거래가격으로 산정한 현수막 제작비(P.56참조)에는 기획·도안료 및 설치·철거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만일 당초 설치 계약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수막의 통상거래가격 범위내에서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 07 선거운동용 윗옷(기부행위에 이르는 형태는 아님)을 여러 종류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제작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공직선거법』 제68조에 의한 윗옷을 여러 종류 제작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면 모든 종류의 윗옷은 1벌당 3만원 이내에서 각각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Q 08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나요?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제작비 중 기획·도안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통상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보전하며, 인쇄비는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적용한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따른 원가계산 [이 경우 필름출력비·인쇄판대·인쇄료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6.6%)을 가산함] 금액 범위내에서 보전합니다.

Q 09 오·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첩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통상적인 인부임은 보전대상인가요?

- ❖ 선거벽보 재첩부 관련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 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나요?

- ❖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됩니다.
- ❖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에게는 아래 기준에 의해 산출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000매 이하 인쇄의 경우 : 매당 750원(양면)
 - 1,000매 초과 인쇄의 경우 : V.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 점자형선거공보 등 제작비 참조 (P.61)

Q 11 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도안·칼라 또는 색지 등으로 인쇄한 경우도 부담해 주는지요?

- ❖ 점자형 선거공보를 도안·칼라 또는 색지 등으로 인쇄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시각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로서 해당 비용은 부담비용에서 제외합니다.

Q 12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명함을 만들어 배부하고 후에 후보자 등록후에도 예비후보자때 제작하였던 명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보전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총 인쇄비는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적용한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따른 원가계산금액 [이 경우 필름출력비·인쇄판대·인쇄료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6.6%)을 가산함]을 인쇄수량으로 나눈 후 선거운동기간 중 실제 배부한 매수를 곱한 금액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 후보자는 총 인쇄 수량,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한 수량, 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한 수량, 잔여수량을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는 「명함 사용 내역서」와 관련 인쇄비용 증빙서류를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함 사용 내역서

1. 선거명(선거구명) :
2. 소속정당명 :
3. 후보자명 :
4. 명함 인쇄 및 사용 내역
 - 가. 총 제작 수량 : 매
 - 나.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한 수량 : 매
 - 다. 선거운동기간중 배부한 수량 : 매
 - 라. 잔여수량 : 매
5. 보전청구액
 - 가. 총 인쇄비용 : 원
 - 나. 매당 단가 : 원
 - 다. 청구 금액 : 원(매당단가×선거운동기간 중 배부한 수량)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선거에 있어 후보자 명함 제작 사용 내역 및 보전 청구액을 위와 같이 소명합니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용 내역 보고 및 청구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귀 위원회에 반환하는 등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명함제작 인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2012년	월	일
청구인 후보자			(인)
선거사무장			(인)
회계책임자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4. 공개장소 연설 · 대담

Q01 로고송 제작시 저작권료 및 저작인격권료도 선거비용 보전대상인가요?

- ❖ 로고송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이며 저작권료, 저작인격권료, 제작비로 구성됩니다.
- ❖ 저작권료란 원래의 곡을 개사 · 편곡없이 복제하여 대중에게 사용하고자 할 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전 지불하는 비용으로 P.60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저작인격권료란 원래의 곡을 개사 또는 편곡하고자 할 때 해당 저작권자 (작사 · 작곡가)에게 사전 동의를 얻고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말합니다.
 - ※ 불법사용에 따른 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보전청구 시 저작권료 납부영수증과 저작권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 로고송 문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TEL. 02 - 2660 - 0522~ 0527)
[http:// www.komca.or.kr](http://www.komca.or.kr)

Q02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차량의 홍보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 · 도안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03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 · 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04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자동차 · 확장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 보전받을 수 있나요?

- ❖ 선거일후에도 자산가치가 남거나 활용이 가능한 자동차 · 확장장치 그 밖의 내구재 구입비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05 선거운동용 자동차 (『공직선거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 등 첩부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함)에 선거벽보 첩부 · 철거에 따른 차량훼손 수리비는 보전대상인가요?

-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5. 전화이용 선거운동

Q01 선거사무소에 임시전화를 설치한 후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유권자와 유선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 선거사무소에 임시전화를 설치한 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는 적법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임시 전화의 설치에 따른 설치비와 선거운동기간중의 기본료 및 통화료(시내·외통화료 불문,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포함)는 모두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입니다.
- ❖ 임시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사무소에 기설치된 일반전화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선거운동에 사용한 통화료에 관한 입증자료(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청구서,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 직전3개월간의 평균통화료 산출자료)와 정확한 청구금액(선거운동기간 중의 통화료 - 직전 3개월간의 통화료를 일할 계산한 후 선거운동기간 일수 만큼을 곱한 금액)을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선거사무소에 기설치된 일반전화를 사용할 경우 보전청구할 통화료산출, 증빙서류 구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화이용 선거운동에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에게 소정의 법정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금품 등을 보상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Q02 선거운동기구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나요?

- ❖ 수신받는 전화가 유선전화인지, 휴대전화인지를 불문하고 그 통화료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입니다.
- ❖ 따라서 선거운동기구에 설치한 전화로 선거권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통화료는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03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선거권자에게 전화를 걸어(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나요?

- ❖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료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아니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를 후보자가 부담하였다면 그 통화료는 보전합니다.
- ❖ 다만, 후보자가 휴대전화를 임차하여 위 대상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그 휴대전화 통화료 외에 휴대전화 임차료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04 보전되는 휴대전화 통화료에는 문자메시지 전송료도 포함되나요?

- ❖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료도 휴대전화 통화료에 포함됩니다.

Q05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Q06 전화통화료는 모두 보전대상인가요?

- ❖ 유선전화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전화의 통화료(설치료 등 포함)만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대상입니다.
- ❖ 휴대전화의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만 보전대상입니다.
- ❖ 송·수화시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과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애드다일 서비스 이용요금은 보전대상입니다.

●●● 6. 신문·방송·인터넷 등 이용 선거운동

Q01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나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02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차한 홈허브의 임대료 및 와이브로의 데이터 사용요금은 보전대상입니다.

Q03 신문광고 및 인터넷 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Q04 신문광고비용 또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인가요?

- ❖ 신문광고비용 또는 방송연설비용은 선거기간 중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므로 최저요금 범위내에서 보전합니다.

Q05 후보자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전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선거운동하는 경우 그 제작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Q06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 보전대상인가요?

- ❖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 7. 그 밖의 사항

Q01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02 당내경선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나요?

- ❖ 적법한 당내경선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다만, 당내경선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당내경선 소요비용은 위법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03 정책·공약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인가요?

- ❖ 정책·공약개발 등 선거운동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운동준비행위로 보아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Q04 보전비용은 2012. 4. 23.(월)까지 청구하되, 누락된 경우 회계보고 마감일인 2012. 5. 11.(금)까지 추가 청구하면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2012. 5. 11.(금)에 일괄 청구하여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는지요?

- ❖ “누락”과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 2012. 4. 23.(월)까지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청구내역이 누락된 경우 회계보고 마감일까지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 8. 선거비용 보전제한 · 유예

Q01 선거비용 보전이란 무엇인가요?

-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비용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Q02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인가요?

- ❖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모두를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전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별도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급한 수당 · 실비 등
 2.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3.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소외의 유사기관(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 임차 · 설치 · 유지비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제작매수를 초과 인쇄한 경우 그 초과 인쇄비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방송연설 비용
 - 공개장소의 연설 · 대담을 한 사람(연설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설 · 대담을 하게 한 경우와 일반인이 후보자 등의 지정을 받아 연설 · 대담을 한 경우를 포함)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4.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 · 실비 그 밖의 비용 등

6. 정당한 사유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 한 비용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제작업체가 일반 과세사업자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경우 등
7.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 · 장비 · 물품 등을 사용한 경우
 - 후보자의 가족 · 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 · 장비 ·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은 경우
 - 과거 선거시 사용하였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 과거에 찍어둔 사진 또는 사진원판(필름)을 사용하여 선거벽보 게재용 사진을 제작한 경우
 - 정당 · 후보자 · 배우자소유의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 · 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등
8. 청구금액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한 통상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은 P.55이하 참조
9.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 장비 · 물품 등의 임차 · 구입 · 제작비용
 - 방송연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금 등
 - ※ 무투표 당선인이 후보자등록 마감전에 이미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작한 경우 그 제작사실을 입증하여 해당금액을 보전청구 할 수 있음.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
1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 관리 · 업데이트 비용 등
1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13.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
14.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15.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Q 03 어떤 경우에 2배의 선거비용 보전이 제한되나요?

- ❖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보전되며,
-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미보전됩니다.

Q 04 어떤 경우에 2배의 선거비용 보전이 유예되나요?

- ❖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유예되며,
- ❖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유예 됩니다.

Q 05 어떤 경우에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제한 되나요?

- ❖ Q.04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6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보전됩니다.

Q 06 보전제한과 보전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보전제한은 해당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며,
- ❖ 보전유예는 해당 선거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해당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IV.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항목 일람표

※ 이 예시는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법규개정이나 선례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당내경선의 실시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57조의 2 (당내경선의 실시)	특별당비 및 공천심사료			○	

●●● 당내경선운동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57조의 3 (당내경선운동)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위반되는 경선운동비용		○		
	예비후보자등록후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선운동비용			○	

●●●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59 조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		
	예비후보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글 등을 게시하기 위한 아이폰 구입비		○		
	스마트폰 3차원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한 선거용 홍보물 등의 모바일 AR기술 제작비용		○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인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를 상주시키고 그에게 지급한 인건비 ⇨ 위법비용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 · 수도료 기타유지비로서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 · 수도료 기타유지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컵라면, 통닭, 족발, 담배 구입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외의 유사기관 (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등) 임차 · 설치 · 유지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책상 및 의자 등 OA구입 · 설치비			○	
	칸막이 등 내부구조물 설치 및 철거비 등 내부 수리비			○	
	TV, 복사기, 전화기, 프린터, 정수기, 냉 · 난방장치 등 설치 · 유지 · 구입 · 임차비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각종 인영 · 고무인 등 제작비			○	
	선거사무소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선거사무소의 생수 · 휴지 · 쓰레기봉투 구입비			○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	
선거운동과 관련한 도서 구입비			○		
선거사무소의 냉 · 난방용 연료비			○		
선거사무소 내부의 선거홍보물 제작 · 첩부 · 게시비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선거사무소 등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 방송의 설치·유지비			○	
	선거사무소 이전비			○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등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	
	선거사무소 등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 잡무처리(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할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	

●●● 예비후보자 법정 간판·현판·현수막(간판 등이라 함)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의 간판 등 제작·설치·철거비		○		
	건물 외벽면에 현수막 설치를 위해 지급된 정당한 사용료		○		
	과거 선거시 사용했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통상적인 제작비		○		
	간판 등을 교체·보완하는 경우 제작·설치비		○		
	간판 등을 제작·설치·철거시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래한 비용		○		

●●● 예비후보자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명함(점자형 포함) 제작비		○		
	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일부만 배부하고 중지한 경우 명함 전체 제작비용 ⇨ 위법비용		○		

●●● 예비후보자 전자우편·전화·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59 조 (선거운동기간)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인터넷 설치·유지비			○			
	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전자우편 디자인 및 편집비용			○			
	홈서브 장비 임대료 및 와이브로 데이터 사용요금			○			
	예비후보자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전송용 동영상 제작비용			○			
	전화 설치비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			
		임시전화기 임차료		○			
	전화 통화료 (선거운동용전화기는 임시전화사용을 원칙으로 함)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전화 (휴대전화 포함) 통화료		○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전화를 통한 애드다이얼 서비스 이용요금(문자외의 음성정보는 제외)			○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위법비용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 로서 행한 횟수는 후보자로서 행하는 횟수에 포함됨. 이하에서 같음) 이내에서 전송한 경우 그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를 초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과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위법비용 ※ 예비후보자로서 법정횟수 5회를 모두 전송한 경우 후보자로서는 전송할 수 없음			○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위법비용			○				

● ● ●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0/100 이내)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비(기획·도안료, 인쇄료)		○		
	홍보물 봉투 제작비, 발송 소모품비, 발송우편 요금, 반송된 경우의 재발송 우편요금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지불한 홍보물 발송비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라벨첨부, 봉투봉합 작업 등에 종사한 인부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비			○	

● ● ● 예비후보자 어깨띠 및 표지물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어깨띠·표지물 이용 선거운동에 소요된비용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표지물: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 ● ● 예비후보자공약집(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선거)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 4 (예비후보자 공약집)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			○	

● ●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포함, 이하 '선거사무소 등' 이라 함)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6 1 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선거기간 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6 1 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컵라면, 통닭, 족발, 담배 구입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 임차·설치·유지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책상 및 의자 등 OA 임차·구입·설치비			○	
	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 내부 수리비			○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운동용 전화키편 공사비			○	
	선거사무소 등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			○	
	TV, 복사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생수·휴지·쓰레기봉투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	
	선거운동과 관련된 도서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냉·난방용 연료비			○	
	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첨부·철거비			○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6 1 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 방송의 설치·유지비			○	
	선거사무소 등의 이전비			○	
	선거사무소 등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			○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	
	선거사무소 등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 잡무처리(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개소식과 관련하여 다과 제공을 위한 준비도구 (쟁반, 접시, 일회용젓가락, 숟가락 등)의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에 세공, 캡스 등 보안장치 설치비			○	

●●●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 등 이라 함), 선거벽보·
선거공보·선거공약서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6 1 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LED(동영상 표출은 제외)를 이용한 간판 등의 설치시 그 제작비용	○			
	고층건물에 간판 등 설치·철거에 따른 특수장비(고가사다리차 등) 임차비용	○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간판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	○			
	현수막의 기획·도안과 현수막 제작을 별개의 업체와 계약한 경우 현수막 기획·도안료 ↳ 현수막의 통상거래가격 초과분은 보전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6 1 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당초 설치계약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선거일 후에 선거사무소 간판 등의 철거에 소요된 비용	○			
	예비후보자 시절 제작·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설치한 간판 등의 제작·설치비 (다만, 해당 간판 등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새로 교체한 간판 등의 비용만 보전)	○			일할계산
	선거운동기간 중 간판 등을 교체·보완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보완된 간판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면에 현수막 설치를 위해 지급된 상당한 사용료	○			
	선거사무소 내부현수막을 외부현수막으로 대체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현수막 게시비용	○			
	선거사무소 외벽에 붙이는 선거벽보 코팅비	○			
	통상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의 기획·도안료 외에 별도의 기획·도안료		○		
	과거 선거시 사용하였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통상적인 제작비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첨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		
	법정 수량을 초과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의 설치·철거비 ⇨ 위법비용		○		
	야간에 선거사무소 외벽을 비추기 위해 설치한 조명 설치비용			○	
	선거사무소의 간판 등을 비추기 위해 별도 설치한 조명시설 설치비용			○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시 원래 있던 다른 가계의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는데 소요된 비용			○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로 인해 주변 상가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여 통상의 손해배상 차원에서 정당하게 요구된 비용 ⇨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 ● ● 선거벽보(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외), 책자형선거공보,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 해당. 이하같음)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기획·도안료, 인쇄료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 ⇨ 실거래 가격을 보전함	○			통상거래 가격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 통상거래가격을 보전함	○			실거래 가격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제작과 관련한 교정비용(기획·도안료에 포함)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제 6 4 조 (선거벽보)	내용이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각 기획·도안료	○			
제 6 5 조 (선거공보)	오·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첨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부임	○			
제 6 6 조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선거공약서에 게재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업체가 일반과세사업자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경우		○		
	후보자측 잘못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선거벽보·선거공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		
	과거에 찍어둔 사진 또는 사진원판(필름)을 사용하여 선거벽보 게재용 사진을 제작한 경우 그 촬영비		○		통상거래 가격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정당·후보자가 직접 선거벽보·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기획·도안한 경우		○		통상거래 가격
제 6 4 조 (선거벽보)	선거공보를 정상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후보자측(배송업체) 잘못(배송과정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일부 수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으로 일부 수량을 다시 제작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		
제 6 5 조 (선거공보)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매수를 초과 인쇄하여 제공한 경우 그 초과 인쇄비 ⇨ 위법비용		○		
제 6 6 조 (선거공약서)	선거운동 준비행위인 정책·공약개발, 여론조사 기획 등에 소요된 컨설팅 비용			○	

●●● 점자형 선거공보·선거공약서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발송용봉투 작성비와 우편발송비용	○			
	점자형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비용			○ (부담)	
제 6 5 조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부담)	
제 6 6 조 (선거공약서)	점자형 선거공보에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외에 선거공보의 내용 또는 그림 등이 들어간 경우 그 기획·도안료, 인쇄료			○ (미부담)	
	후보자측 잘못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점자형 선거공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 (미부담)	

●●● 거리게시용 현수막(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6 7 조 (현 수 막)	현수막 제작·설치·철거비	○			
	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 ⇨ 실거래가격을 보전함	○			통상거래 가격
	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 통상거래가격을 보전함	○			실거래 가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현수막의 제작·설치·철거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이동 게시한 경우 현수막 제작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이동게시에 소요된 통상적인 인건비	○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부득이 개인소유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급한 사용료 ⇨ 통상거래가격 보전	○			
	현수막을 제작하였으나 후보자측의 과실 또는 변심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제작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현수막 이동비용 ⇨ 위법비용		○		

●●●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6 8 조 (어깨 띠)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윗 옷: 규칙 제59조 제1항제 5호에 따른 3만원 이내 -모자, 마스크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공직선거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착용자가 사용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이하에서 '어깨띠 등 소품' 이라고 함) 제작비 ※ 어깨띠 등 소품 착용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68 조 (어깨띠)	선거운동용 옷을 교체 사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경우 그제작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어깨띠 등 소품의 제작비	○			
	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 (실제 착용 가능한 수범위내에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 네온보드의 임차비용	○			
	『공직선거법』 제68조에 의한 어깨띠 등 소품 이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 등 제작·구입비 ⇨ 위법비용		○		
	『공직선거법』 제6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용한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 ⇨ 위법비용		○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하여 업체로부터 택배 등을 통하여 받은 경우 그 운반비용			○	

● ● ● 신문광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69 조 (신문광고)	신문광고 원고 기획·도안료	○			
	신문광고료(최저요금)	○			
	신문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	○			

● ● ● 방송광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70 조 (방송광고)	방송광고 기획비 (방송광고의 기획은 기획사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기획비용을 말함)	○			
	방송광고의 제작비	○			
	방송광고료(최저요금)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			
	방송광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		

● ● ● 방송연설(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7 1 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방송연설의 기획을 기획사에 의뢰하여 통상거래가격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 기획비용	○			
	방송연설의 제작비	○			
	방송연설 방송료(최저요금)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			
	웅변학원·전문가 등에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	○			
	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에 지불한 분장비	○			
	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	○			
	방송연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금		○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방송연설 비용 ⇨ 위법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 ⇨ 위법비용		○		
	방송연설의 시연에 소요된 비용			○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한 분장의 재료 구입비, 분장 보조자 사례금, 이발·미용료 등 분장비			○	
	방송연설을 위한 후보자 양복, 구두, 안경 등 구입			○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CD·비디오 등 제작비			○		

●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조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 7 9 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선거운동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의 공개장소 연설 · 대담차량 임차비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치 · 철거비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차량의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 · 도안료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차량 기사임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차량의 고장으로 다른 차량을 임차한 경우 그 홍보물을 교체하기 위해 지불한 1일 동시에 2대를 임차한 경우의 임차비	○			1대분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연단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	○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 · 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차량의 유류비, 유료 통행료,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도선료	○				
	확성장치 · 녹화기 임차비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 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	○			
		녹화기 운반용 차량	○			
	로그송 제작비	인공위성을 이용한 녹화기의 영상물 방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성채널 위성중계 · 영상촬영 차량의 운영비와 인건비, 위성수신 장치 설비비용	○			
		로그송 사용에 필요한 저작권료, 저작인격권료	○			
로그송 제작업체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직접 저작권료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				
	로그송 제작에 소요되는 스튜디오 사용료, 테이프 복사 등 제작비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7 9 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 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			
	전문가에게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	○			
	예비용 확장장치를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임차비	○			실제 사용일을 일할계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설치된 녹화기를 통하여 방영하는 홍보물에 수화통역을 함께 방영하는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수화통역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수화통역을 한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래핑을 위하여 차량을 개조하게 될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구조물 설치비 포함)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유세로봇 설치비	○			
	연설·대담차량의 LCD 영상상영을 위한 노트북 임차비용	○			
	후보자의 배우자를 연설·대담차량 기사로 고용하고 지급한 기사인부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녹음기의 배터리 교체비용	○			
	정당·후보자·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		통상거래 가격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		○		
중앙당이 확장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지원한 경우 그 차량임차료		○		통상거래 가격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 79 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통상적인 차량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LED전광판 운용기사 인부임 외에 별도 지급한 기사 인부임 ⇒ 위법비용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외에 별도 지급한 기사 식대, 숙박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 ⇒ 위법비용		○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 위법비용 ※ 연설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설·대담을 하게 한 경우와 일반인이 후보자 등의 지정을 받아 연설·대담을 한 경우를 포함		○			
	전체 임차료에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전이나 선거일이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가 포함된 경우			○	선거운동 기간만 일할계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범퍼, 타이어, 라이닝, 유리, 각종 오일 교환 등 수리·정비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보호용 덮개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보험료			○		
	확성장치 · 녹화기 수리비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			○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능력 향상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		
	연설문 코팅비			○		
	선거운동기간 매일 아침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시 정당한 손해배상에 근거한 차량수리비			○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정치자금 지출대상 아님		

●●●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 59 조 (선거운동기간) 제82조의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 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				
	전자우편 디자인 및 편집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	○				
	홈허브 장비 임대료 및 와이브로 데이터 사용요금	○				
	후보자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전송용 동영상 제작비용	○				
	전화 설치비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			
		임시전화기 임차료	○			
	전화 통화료 (선거운동용 전화기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이하에서 '통화료' 라고 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휴대전화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비 포함. 이하에서 같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컴퓨터, CTI 전용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료	○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	○				
	선거사무소를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여 전화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한 전화의 선거운동기간 중 통화료	○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전화를 통한 애드다이얼 서비스 이용요금(문자외의 음성정보는 제외)	○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후보자 부담, 080 서비스)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59 조 (선거운동기간) 제82조의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 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 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하되 보전하지 아니함)이내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			
		비즈메시징서비스를 이용하여 문 자 메 시 지 를 발 송 한 선거사무소 유선 전화의 서비스 이용요금	○			
		인터넷 및 유·무선 통신 융합 기술을 응용하여 유선(대표) 전화에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비용	○			
		문자메시지를 색상문자로 발송하였을 경우발송비	○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위법비용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를 초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과 전송에 소요된비용⇒ 위법비용			○	
후보자가 부담하는 적법한 통화료외의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선거운동용 전화기 구입시 지출비용			○			
휴대전화 임차료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 59 조 (선거운동기간)	제3자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화 통화료		○		
제82조의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제82조의 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텔레마케팅 전문강사 초빙 비용			○	
	일반사무용 또는 정당사무용으로만 사용한 전화 통화료			○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한 무전기 구입비·임차비 사용료			○	
	선거운동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임차한 컴퓨터 임차료			○	

●●● 인터넷 광고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82조의 7 (인터넷 광고)	인터넷 광고 기획·도안료	○			
	인터넷 광고용 배너·팝업 등 제작비	○			
	인터넷 광고비	○			
	인터넷 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	○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는 사업자 등에게 지불한 광고비 ⇨ 위법비용		○		

●●● 확장장치와 자동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 91 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선거벽보·선거공보 첩부·철거비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91 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첨부하는 선거벽보코팅비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첨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급한 임차료 외의 사례금 ⇨ 위법비용		○		
	선거운동관계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료 대납비용 ⇨ 위법비용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유류비·기사 인건비·수리비 등 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 첨부·철거에 따른 차량훼손 수리비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도서지역 이동시 도선비			○	

●●● 공개장소 연설(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104 조 (연설회장에서 의 소련행위등의금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장 연단 주변에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설치비	○			

●●● 행렬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105 조 (행렬등의금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한 경우 통상적인 자전거 임차비용		○		

●●●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위법한 여론조사비 ⇨ 위법비용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비			○	

●●●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 사목	선거운동을 위하여 관할 구역을 방문할 때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	○			
	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	○			
	예비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		○		

●●● 선거일후 답례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 118조 (선거일후 답례 금지)	선거일후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가두방송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에 따른 인사서신 발송비용			○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 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실비 (숙박비 제외)	○			
	선거사무원을 근무일을 달리하여 교체 선임 · 신고한 경우 교체 전 · 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된 수당 · 실비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135 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과실비보상)	근무일이 중복되도록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교체가능인원 범위 안에서 교체 전·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실비는 1일 분을 실제 선거운동에 종사한 시간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를 지급하되, 보전하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는 1명분에 한함	○				
	후보자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신고하고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사무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식사제공 비용	○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가 식사를 하였을 경우의 식사비(카드결제 등 증빙서류 구비)	○				
	선 거 사 무 관 계 자 에 게 제 공 하 는 식사의 취사비 (단, 취사비 항 목 총 액 이 선거사무 관계자 식 대 총 액 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 법 비용으로 미보전)	취사인부임	○			
		취사도구·주방기구 임차비 ⇒ 구입비는 미보전	○			
		주식 및 부식 구입비	○			
		가스 등 연료비	○			
	선거사무장 등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이동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그 일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한 임차료 및 기사인부임	○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의 도선료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식대 외의 활동비·격려금·회식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 ⇒ 위법비용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 135 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가족에게 선거사무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그 식사비 (다만,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인 경우에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됨)		○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별도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일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도선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신분으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외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등에서 서류정리, 비품관리, 회계업무 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제공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제공에 소요된 비용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등 제3자가 정당, 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회식비, 식대 ⇨ 위법비용		○		
	안전관리요원 명목의 인건비는 위법비용이나 경비 업체를 통한 단순 안전관리 의뢰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위법비용		○		
회계사무부조자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 등 ⇨ 위법비용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 135 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과실비보상)	후보자 숙박비			○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숙박비			○	
	우천시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일회용 비옷 구입비용			○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공직선거법』 제91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포함)의 운영비용(임차료 및 기사인부임 등)			○	
	배우자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	
	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인은 1명만 둘 수 있음)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부담)	

● ● ● 과태료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과태료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를 후보자가 대납한 경우 그 비용 ⇨ 위법비용		○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예 - 선방위 초청대상 대담토론회 개최시 불참한 후보자 등)				정치자금 지출대상 아님

● ● ● 대집행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대상
		보전	미보전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대집행비용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대집행 비용을 후보자가 대납하는 경우 그 비용 ⇨ 위법비용		○		

●●● 그 밖의 사항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거나 납품이 지연되어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의 구입비용			○	
	선거권자 추천장 인쇄비용			○	
	후보자 본인의 정당활동 사진을 선거기간 중 각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한 비용			○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되는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			○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 발급을 위한 코팅비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			○	
	선거비용의 계좌입금·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선거비용 지출을 위한 수표발행 수수료			○	
	정치자금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비용			○	
	당선축하용 꽃다발 구입비			○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	
	기자회견 장소 사용료			○	
	선거인명부 사본교부비용과 인쇄비용			○	

V.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포함)

●●● 1. 통상거래가격 등 산정기준

- ◆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산정대상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금액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통상거래가격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6.6%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통상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 ◆ 다만, 물품 등의 구입·제작에 특수재질·특수인쇄·특수조건이 부가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의 산정액외에 별도의 비용을 인정함.
- ◆ 정부의 기준요금이 있는 항목은 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통상거래가격 등으로 함.
- ◆ 점자형 선거공보 등 점자인쇄비(천공방식)는 인쇄방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사된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그 통상거래가격으로 함.
- ◆ 통상거래가격 산정 항목 중 특정 규격이 없는 항목의 통상거래가격은 해당 항목의 바로 위·아래 규격의 산정액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함.
예) 산정 항목 중 규격이 없는 휴대용 확장장치 45w의 임차가격은 40w의 임차가격 19,000원과 50w의 임차가격 22,000원 사이의 20,500원을 통상거래가격으로 결정함.
- ◆ 통상거래가격 등을 산정함에 있어 1,000원 미만의 단수는 1,000원으로 함. 다만,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기준요금,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단가 산출액, 특수재질 등이 부가되어 별도의 비용을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2. 세부 항목별 결정내역

●● 간판 제작비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재 질	산정액	비 고
외벽게시용	㎡	플렉스	133,000	㎡당 단가, 조명·설치·철거비 포함
		포맥스	81,000	
		문자 LED 전광판	588,000	㎡당 단가, 설치·철거비 포함

●● 현수막 제작비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재 질	산정액	비 고
거리 게시용	제작비	㎡	12,000	㎡당 단가, 설치·철거비 포함
	이동 게시비	1인, 1일	75,608	정부 기준요금
외벽게시용	㎡	천	17,000	㎡당 단가, 설치·철거비 포함

●● 외벽게시용 간판·현수막 설치·철거 장비 임차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크레인	1일	413,000	
사다리차	1일	388,000	
로프이용료	1일, 1인	212,000	

●● 후보자 사진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촬 영 비	76cm×53cm	477,000	
제작비	인쇄하는 경우	76cm×53cm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의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원가계산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6.6% 적용 ※ 필름출력비, 인쇄판대, 인쇄료에 6.6%를 적용
	인화하는 경우	76cm×53cm	실소요비용

● ● 명함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제 작 비	9cm×5cm이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의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원가계산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6.6% 적용 ※ 필름출력비, 인쇄판대, 인쇄료에 6.6%를 적용	
제작용지가격	아트지(1연, 200g)	114,000	
	레자크지(1연, 200g)	226,000	
	휘라레(1연, 216g)	520,000	
	반누버(1연, 209g)	715,000	

●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기획 · 도안료	선 거 벽 보	53cm×38cm	674,000	면당 단가
	선 거 공 보(8면) · 지방의회의원	27cm×19cm	148,000	
	선 거 공 보(12면)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	27cm×19cm	155,000	
	선거공약서(16면) · 시·도지사 · 교육감	27cm×19cm	166,000	
	선거공약서(12면) · 자치구·시·군장	27cm×19cm	160,000	
인 쇄 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의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원가계산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6.6% 적용 ※ 필름출력비, 인쇄판대, 인쇄료에 6.6%를 적용			
재단료		7,000	연당 단가	
철사중철제본료		40	부당 단가	
접지료		11		

※ 기획·도안료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기획·도안료 총액의 범위내에서 합산하여 보전 가능

● ● 어깨띠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재 질	산정액	비 고
제작비	240cm×20cm이내	부직포	7,000	개당 단가

※ 특수재질·특수인쇄 등이 입증되는 경우 별도 비용 인정

● ● 윗옷

(단위 : 원)

구 분	산정액	비 고
구입비	30,000 이내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별당 단가)
기호등 인쇄비	4,000	별당 단가

● ● 모자

(단위 : 원)

구 분	산정액	비 고
션 캡 형	5,000	개당 단가
일반 형	6,000	
기호등 인쇄비	1,000	

● ● 신문광고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기획·도안료	1면, 4단	2,101,000	
	2~4면, 5단	2,066,000	

● ● 방송광고

(단위 : 원)

구 분	산정액	비 고
라디오광고 기획료	1,856,000	위성방송 포함

●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차량 임차료(1일)	1톤	283,000	기사인부임 · 유류비 포함
	1.5톤	294,000	
	2.5톤	371,000	
	5톤	438,000	
	대형버스(45인승)	520,000	
	미니버스(25인승)	382,000	
기사인부임	1인, 1일	111,000	
휴대용 확장장치 임차료(1일)	10w	5,000	
	20w	11,000	
	30w	13,000	
	40w	19,000	
	50w	22,000	
차량용 확장장치 임차료(1일)	앰프100w	75,000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인버터 포함
	앰프300w	97,000	
	앰프500w	160,000	
	앰프700w	179,000	
	앰프1KW	206,000	
	앰프3KW	325,000	
	앰프5KW	462,000	
	앰프7KW	584,000	
앰프9KW	676,000		
차량래핑비	m ²	63,000	
발전기 임차료(1일)	1KW	68,000	유류비 포함
	3KW	92,000	
	5KW	120,000	
	7KW	147,000	
	9KW	172,000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인버터 발전기 임차료(1일)	1KW	43,000	
	3KW	59,000	
	5KW	92,000	
	7KW	118,000	
	9KW	129,000	
차량용LED 전광판 임차료 (1일)	3㎡	928,000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용) (3㎡이내)
	5㎡	1,148,000	국회의원, 자치구·시·군장 (후보자용)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연락소용) (5㎡이내)
	7㎡	1,431,000	
	10㎡	2,125,000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자용) (10㎡이내)
녹화물 제작비	30초품	1,965,000	
	1분품	2,892,000	
	3분품	4,013,000	
	5분품	5,156,000	
	7분품	6,550,000	
	10분품	7,672,000	
로고송저작 재산권료	국회의원, 자치구·시·군장	500,000	
	시·도지사, 교육감	1,000,000	
	시·도의원	250,000	
	자치구·시·군의원	125,000	

● ● 인터넷 광고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제작비	동영상	5초품	888,000	기획료 포함
		10초품	1,048,000	
		15초품	1,319,000	
		20초품	1,497,000	
		30초품	1,683,000	
		60초품	3,530,000	
	팝업	1편	290,000	
	배너	1편	237,000	

● ● 전화홍보시스템

(단위 : 원)

구 분	산정액	비 고
일반전화홍보시스템(1세트)	682,000	노트북 PC, 전화단말기, 솔루션 포함
서버운영시스템(OS)	2,889,000	OS설치PC, 전화단말기 10대

● ● 점자형 선거공보 등 제작비(천공방식)[부담비용]

- 1,000매 이하 제작의 경우 : 매당 750원(양면)
 - ※ 점자점역비, 제판료, 지대, 인쇄료, 제본료, 한글인쇄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 1,000매 초과 인쇄의 경우 : 아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위 : 원)

점자점역비(조판비)(면당)	40,000		
점자제판료(양면 1판)	23,000	판당내쇄력	1,300매
지대(매당)	19		
점자인쇄료		점자제본료 [앞면 한글인쇄비(스티커부착비) 포함]	
기준매수	양면1매당	기준부수	부당
10,000매 초과	190	10,000부 초과	230
5,000매 초과	200	10,000부 이하	260
1,000매 초과	210	5,000부 이하	290
		1,000부 이하	310
		500부 이하	330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점역·교정사(국가공인민간자격)의 점자해독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012. 4. 11. 실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발행일	2012년 3월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우편번호 427-727) www.nec.go.kr
디자인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02)868-6854

민주주의 꽃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